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1. . . (제 회)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조정실 소관)
제출연월일	2021. . .

1. 의결주문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무조정실의 하부조직에 청년정책조정실이 신설되는 내용으로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간사 및 사무국장을 변경하고, 「청년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년기본법」 제15조의2가 신설(법률 제18433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청년인재의 대상, 정보 수집 범위, 정보 수집 절차, 정보의 활용 및 보호 등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간사를 변경함(안 제11조제4항)

- 1)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21.6.15 시행)으로 기존에 청년정책추진단이 담당하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업무를 청년정책조정실이 담당하게 되어, 개정된 직제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간사를 청년정책추진단 단장을 겸임하던 국무2차장에서 청년정책조정실장으로 변경

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사무국장을 변경함(안 제18조제2항)

- 1)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21.6.15 시행)으로 기존에 청년

정책추진단이 담당하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업무를 청년정책조정실이 담당하게 되어, 개정된 직제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사무국장을 청년정책추진단 단장을 겸임하던 국무2차장에서 청년정책조정실장으로 변경

다. 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함(안 제20조의2 신설)

-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청년인재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장이 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할 수 있게 함.
- 2)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서 일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분야별 단체, 교육기관 등의 추천을 받거나 직·간접적인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을 청년인재로 함.
- 3) 그 외 정보 수집의 범위 설정,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 금지, 정보 수집의 절차, 정보의 활용 및 보호 등 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의 운영에 관한 것을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 1)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2(청년정책조정실장) ① 청년정책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무2차장을 보좌한다.

1. 청년정책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 「청년기본법」 등에 따른 청년 관련 제도 관리 및 개선
4. 청년정책의 분석 및 이행상황 점검·평가
5. 청년과의 소통 활성화 및 청년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2) 청년기본법

제15조(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청년정책 결정과정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범위와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년 참여 현황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청년 참여 현황을 공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⑤ 국무총리는 청년정책과제의 설정·추진·점검을 위하여 청년정책

전문가와 다양한 청년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청년인재정보의 수집·관리)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5조에 따른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춘 청년인재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② 청년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로, “공직후보자 등”은 “청년인재”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 범위·절차 및 수집된 정보의 활용·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예산조치 : 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사업비는 국회 및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증액편성할 계획임.

다. 합 의 : 인사혁신처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시스템 활용 지원 협의 완료, 기타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와는 의견조회 예정임.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제4항 중 “국무2차장”을 “청년정책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8조의제2항 중 “국무2차장”을 “청년정책조정실장”으로 한다.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청년인재에 관한정보의 수집 및 관리) ① 국무조정실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청년인재(이하 “청년인재”라 한다)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위한 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법 제 15조의2 제1항에 따른 청년인재는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 청년단체 등 시민단체, 분야별 협회·단체, 대학 등 교육기관 등에서 추천하거나 정책결정과정에 직·간접적인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할 필요가 있다고 국무총리가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③ 제1항에 따라 수집·관리하는 청년인재에 관한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성명, 나이 및 연락처

2. 학력, 경력, 자격사항 및 상훈

3. 현직 및 전직 직위, 전문 및 관심 분야

4. 주요 저서 및 논문 등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청년인재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인종, 종교, 성별, 나이, 학력, 신체 조건, 직업, 출신지역, 혼인여부, 성적(性的) 지향,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15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3항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기관이 전산으로 관리하는 청년 공무원의 주요 경력, 임용사항, 자격사항 등 청년인재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사 또는 성과평가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년인재에 관한 정보 수집의 절차 및 수집된 정보의 활용·보호 등에 관하여는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제10조의3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제10조의3, 제11조)과 “인사혁신처장”(제2조의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3항)은 각각 “국무조정실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로, “공직후보자 등”은 “청년인재”로, “인사상 목적등”은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①~③ (생략) ④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된다.	제11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①~③ (현행과 같음) ④ ----- ----- ----- <u>청년정책조정실장</u> -----.
제18조(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생략)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된다. ③ (생략)	제18조(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청년</u> <u>정책조정실장</u> -----.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의 범위 등) ①~② (생략) <u><제20조의2 신설></u>	제20조(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의 범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청년인재에 관한정보의 수집 및 관리) ① 국무조정실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청년인재(이하 “청년인재”라 한다)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위한 청년인재데이터베

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법 제 15조의2 제1항에 따른 청년인재는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 청년단체 등 시민단체, 분야별 협회·단체, 대학 등 교육기관 등에서 추천하거나 정책결정과정에 직·간접적인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할 필요가 있다고 국무총리가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
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
간 중에 있는 자

③ 제1항에 따라 수집·관리하는
청년인재에 관한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성명, 나이 및 연락처

2. 학력, 경력, 자격사항 및 상훈

3. 현직 및 전직 직위, 전문 및
관심 분야

4. 주요 저서 및 논문 등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청년인재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할 때 합리적
인 이유 없이 인종, 종교, 성별,
나이, 학력, 신체조건, 직업, 출
신지역, 혼인여부, 성적(性的)
지향,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15조의2에 따
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3항에 따라 국가기
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기관이 전산으로 관리하는
청년 공무원의 주요 경력, 임용
사항, 자격사항 등 청년인재 관
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사 또는
성과평가 등에 관한 자료를 요
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청년인재에 관
한 정보 수집의 절차 및 수집된
정보의 활용·보호 등에 관하여
는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
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
정」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
지,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제10
조의3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제10조의3, 제11조)과 “인사혁신처장”(제2조의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3항)은 각각 “국무조정실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로, “공직후보자등”은 “청년인재”로, “인사상 목적등”은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무조정실 청년정책협력관	
연 락 처	(044) 200 - 1985 (044) 200 - 1999